



중소기업 제조물책임 대응실태 조사 보고서

2002년 7월 1일부터 제조물책임(Product Liability 이하 PL)법이 시행됨에 따라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지난 2월 중소기업의 제조물 책임에 대한 사전준비도입 및 애로사항 등을 파악하여 중소기업지원시책 추진에 활용코자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 설문조사는 2002년 2월 18일부터 3월 18일까지 5인이상 300인미만 중소제조업체 271개사를 대상으로 조사됐다.

- 편집자주 -

1. 제조물책임(PL)관련 일반 사항

1-1. PL법에 대한 인지도

금년 7월부터 시행되는 PL법의 내용에 대하여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전체 응답자의 13.3%, “대충 알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61.2%로 나타나 전체 응답 중소기업의 74.5%가 PL법 내용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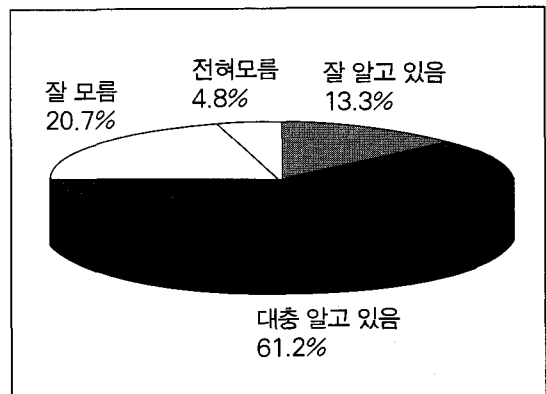
업종별로는 자동차부품·운송장비 업종이 82.7%로 가장 높은 인지도를 보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전기·전자·통신·음향·영상 업종이 81.5%, 화합물·고무·플라스틱 업종이 80.8%의 순으로 높은 인지도를 나타냈다(표 1).

규모별로는 소기업의 11.8%와 56.2%가 각각 “PL법 내용에 대해 잘 알고 있다”와 “대충 알고 있다”고 응답한 반면, 중기업의 경우 전

자가 15.7%, 후자가 69.6%로 나타나 소기업 보다 인지도 면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업체의 15.1%가 “PL법에 내용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한 반면 내수업체의 경우 그 비율이 9.8%에 그쳐 수출업체의 인지도가 내수업체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림 1) PL법 인지도



[표 1] 업종별 PL법 내용에 대한 인지도

(단위 : %)

구분	잘 알고 있다	대충 알고 있다	잘 모른다	전혀 모른다
음식료	10.7	67.9	14.3	7.1
섬유·의복·가죽·신발	13.8	51.7	27.6	6.9
화학물·고무·플라스틱	13.5	67.3	15.4	3.8
조립금속·기계장비·사무기기	14.3	55.6	27.0	3.2
전기·전자·통신·음향·영상	18.5	63.0	14.8	3.7
의류·정밀기기	11.2	61.1	16.7	11.1
자동차 부품·운송장비	10.3	71.4	17.2	0.0
가구 및 기타	12.0	52.0	28.0	8.0

1-2. PL 관련 교육 및 전문인력 육성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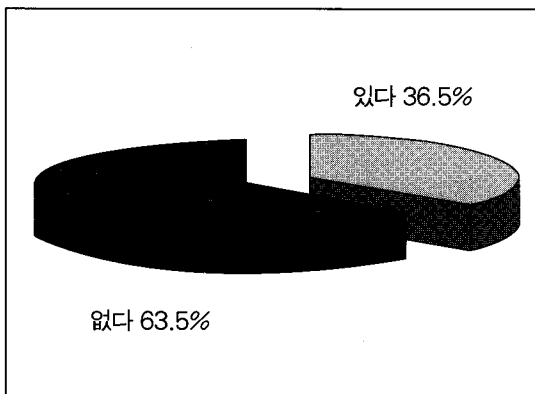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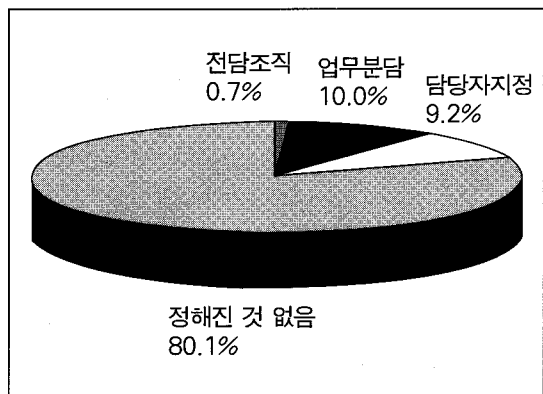
전체 응답자 중 36.5%가 “PL관련 외부교육이나 세미나에 참가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그렇지 못한 경우가 63.5%로 집계됐다 [그림 2].

‘교육받은 인원도 없고 전문가도 육성되지 않은 상태’라고 응답한 경우가 56.1%로 가장 많았으며 ‘일부 종업원이 교육을 받았으나 전문가는 육성되지 않은 상태’라고 응답한 경우가 38.7%, ‘전 종업원이 교육을 받았으나 전문가

로 육성되지 않은 상태’와 ‘일부 종업원이 교육을 받았고 전문가로 육성된 상태’의 경우 그 비율이 각각 3.3%와 1.8%로 미약하게 나타났다.

1-3. PL 관련 조직구성 유무

중소 제조업체의 80.1%가 PL 대응 관련 조직의 구성에 대해 “특별히 정해진 것이 없다”고 응답했으며 다음으로 “기존 조직에 업무 부담을 해 놓은 상태이다”라고 응답한 경우는 10.0%, “담당자가 지정되어 있다”는 9.2%,

[그림 2] PL 관련 교육참석 경험 유무

[그림 3] PL 대응 관련 조직구성 유무


그리고 “전담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불과 0.7%의 낮은 수치를 보였다 [그림 3].

업종별로는 의료·정밀기기 업종이 38.9%로 가장 높은 조직구성율을 나타냈고 전기·전자·통신·음향·영상 업종 25.9%, 음식료 업종 25% 순으로 조직구성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규모별로는 “특별히 정해진 것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소기업의 경우 83.4%로 나타나 74.5%의 중기업에 비해 조직구성율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떠한 형태로든 PL 관련 조직이나 담당자를 두고 있는 경우가 내수업체의 경우 13%로 나타나 23.4%의 수출업체보다 상대적으로 조직 구성율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1-4. PL 관련 대책 추진 상태

응답자중 PL 대책을 충분히 추진하고 있는 업체는 5.2%에 불과했으며, 일부 분야에 PL 대책을 추진중인 업체가 13.7%, 앞으로 추진

할 예정인 업체가 51.9%로 나타났으며 “계획이 없다”고 응답한 업체는 29.2%로 나타났다 [그림 4].

업종별로는 25%의 음식료 업종의 PL 대책 추진이 가장 활발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그 다음으로 24.1%의 자동차부품·운송장비 업종, 23%의 화합물·고무·플라스틱 업종 순으로 PL 대책 추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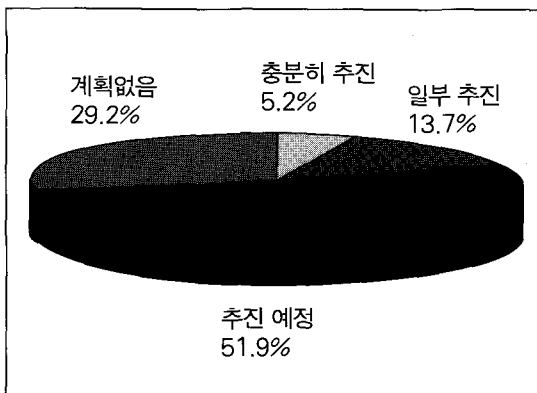
소기업의 15.3%와 중기업의 24.5%가 “PL 대책을 충분히 추진하고 있거나 일부 추진 중에 있다”고 응답해 소기업의 PL 대책 추진이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수출 유무별로는 “PL 대책을 충분히 추진하고 있거나 일부 추진 중에 있다”고 응답한 수출업체가 21.2%인 반면 내수업체의 경우 14.2%에 불과해 상대적으로 수출업체의 PL 대책 추진이 활발한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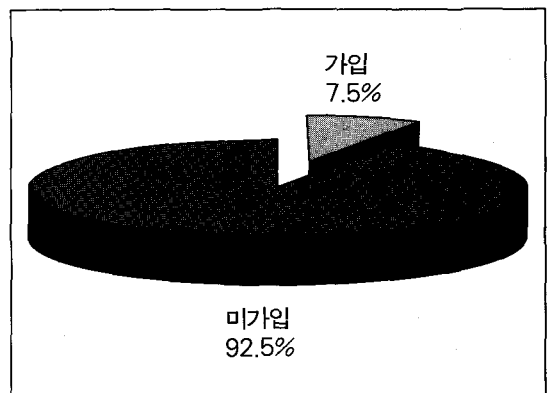
1-5. PL 보험 가입 여부

전체응답자의 92.5%가 PL사고시 대응책으로 PL 보험(제조물책임보험, 생산물책임보험)

[그림 4] PL 대책 추진 상태



[그림 5] PL 보험 가입 여부



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응답했으며, 가입되어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7.5%에 불과했다(그림 5).

업종별로는 음식료의 경우 PL보험 가입율이 23.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의료·정밀기기 업종과 자동차부품·운송장비 업종이 각각 11.8%와 10.3%의 가입율을 나타냈다.

중기업의 8%가 PL 사고 대응책으로 PL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소기업은 그보다 다소 낮은 7.1%의 가입율을 보였다.

수출유무별로는 수출업체의 7.9%가 PL 사고시 대응책으로 "PL 보험에 가입하고 있다"고 응답한 반면, 내수업체의 경우 그 비율이 6.6%로 나타나 수출업체보다 상대적으로 PL 보험 가입율이 저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2. 제조물책임예방(PLP) 대책 실태

2-1. 제품의 안전성을 위한 설계 검토 실시 여부

전체 응답자의 37.1%가 "제품의 안전성을 위한 철저한 설계 검토를 하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52.3%가 "어느 정도 실시하고 있다"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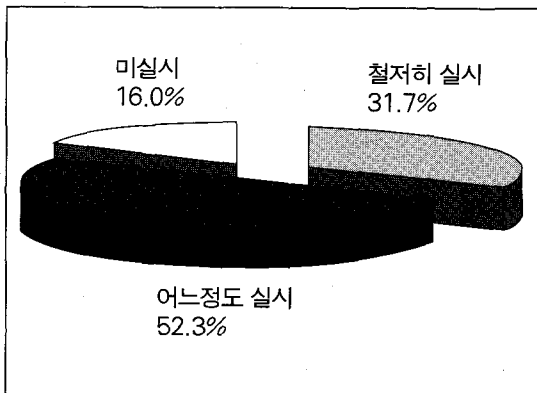
응답해 응답 중소기업의 84%가 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설계검토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6).

업종별로는 음식료 업종의 42.9%가 "안전성을 위한 철저한 설계검토를 실시하고 있다"고 응답해 가장 철저한 설계 검토가 이뤄지는 업종으로 조사되었으며, 그 다음으로 조립금속·기계장비·사무기기 업종이 41.3%, 전기·전자·통신·음향·영상 업종인 38.5% 순으로 철저한 설계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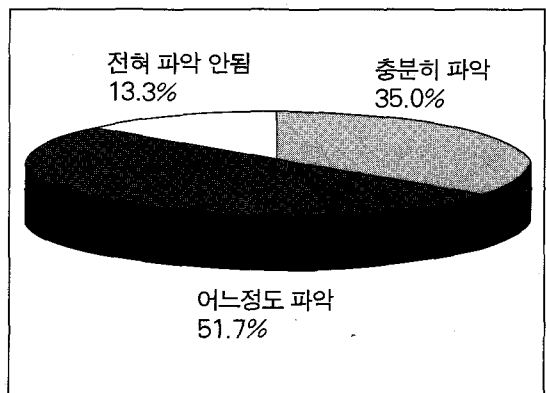
소기업의 34.3%가 "철저한 설계검토를 하고 있다"고 응답해 중기업의 27.1%에 비해 상대적으로 제품 설계시 설계검토를 더 철저히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유무로 살펴보면 수출업체의 31.2%가 "안전성을 위한 철저한 설계검토를 실시한다"고 응답했으며 51.4%가 "어느 정도 실시하고 있다"고 응답해 내수 기업의 32.6%와 53.9%에 비해 오히려 설계검토를 소홀히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6) 안전성을 위한 설계 검토 실시 여부



(그림 7) 제품 위험 요소 파악 여부



2-2. 제품의 위험요소 파악여부

전체 응답자의 35%가 “자사 제품의 위험요소를 충분히 파악하고 있다”고 응답했고 “어느정도 파악하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도 51.7%로 나타나 응답자의 86.7%가 자사제품의 위험요소를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그림 7).

업종별로는 음식료 업종의 경우 “위험요소를 충분히 파악 또는 어느정도 파악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96.3%로 자사 제품의 위험한 부분을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위료·정밀기기 업종 88.9%, 가구 및 기타 업종 88%순으로 위험요소를 잘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기기업의 경우 89%가 “자사 제품의 위험요소를 충분히 또는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소기업의 85.3%에 비해 상대적으로 위험요소를 잘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내수업체의 91.9%와 수출업체의 84.2%가

“자사 제품의 위험요소를 충분히 또는 어느정도 파악하고 있다”고 응답해 수출업체의 자사 제품에 대한 위험요소 파악이 내수 업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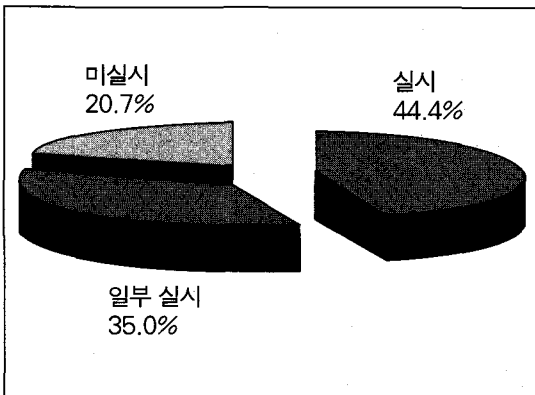
2-3. 결함 방지를 위한 각종 안전검사 실시 여부

전체 응답자 중 “결함 방지를 위한 각종 안전검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44.4%, “일부만 실시하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35%로 전체의 79.4%가 안전검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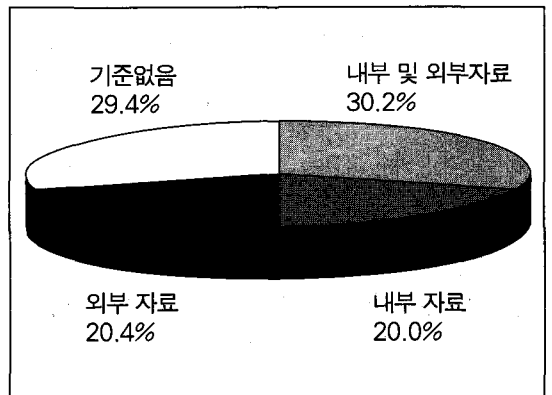
업종별로는 음식료 업종의 85.7%가 “안전검사를 실시하고 있거나 일부 실시하고 있다”고 응답해 타업종에 비해 안전검사 실시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70.8%의 가구 및 기타 업종이 가장 낮은 비율을 보여 안전 검사에 있어 가장 미흡한 업종으로 조사됐다.

규모별로는 중기기업의 83.2%가 “안전검사를 실시하고 있거나 일부 실시하고 있다”고 응답해 소기업의 77%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전 검사에 보다 많은 관심을 두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그림 8] 안전검사 실시 여부



[그림 9] 생산제품에 관한 안전기준 확보 유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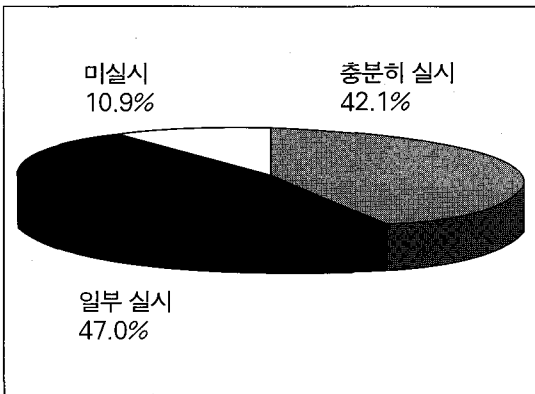
수출 유무별로는 수출업체의 80.7%가 “안전검사를 실시하고 있거나 일부 실시하고 있다”고 응답해 내수 업체의 76.7%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전검사 실시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2-4. 생산 제품에 대한 안전기준 확보 유무

PL 대응차원에서 중요한 의밀르 지니는 관계 법규를 비롯한 외부 자료에 따른 안전 기준을 확보한 업체는 전체 응답자의 50.6%로 나타났고 “자체적으로 작성한 기준만을 가지고 있다”고 응답한 업체가 20%, “특별한 기준이 없다”고 응답한 업체도 29.4%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9).

업종별로는 음식료 업종의 경우 자체적으로 작성한 기준 또는 관련 법규 등 외부에서 입수한 자료를 가지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85.7%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전기·전자·통신·음향·영상 업종이 81.4%, 조립금속·기계장비·사무기기 업종이 75.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10] 생산단계별 검사 실시 여부



규모별로는 중소기업의 30.9%가 “특별한 기준이 없다”고 응답했으며 중기업은 이보다 조금 낮은 27%의 비율을 나타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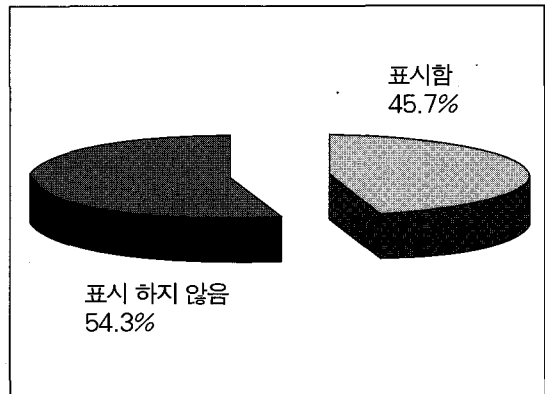
“특별한 기준이 없다”고 응답한 수출업체는 전체의 30.9%로 나타나 내수 업체의 26.7%보다 비율이 높게 나타냈는데, 수출기업의 제품에 대한 안전 기준이 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2-5. 생산(조립) 단계별 적절한 검사 실시 여부

전체응답자의 42.1%가 제조상의 결함 방지를 위해 “생산 단계별 충분한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일부 실시하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도 47%로 나타나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은 적절한 검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10).

업종별로는 의료·정밀기기 업종이 생산 단계별로 “충분한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52.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이 음식료와 전지·전자·통신·음향·영상 업종으로 공히 48.1%의 비율을 보였다.

[그림 11] 경보 표시 여부



규모별로는 소기업의 39.8%가 생산(조립) 단계별로 충분한 검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46%의 중기업에 비해서는 생산 단계별 충분한 검사가 미흡한 것으로 분석됐다.

수출업체의 경우 결함 방지를 위해 생산 단계별로 “충분한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46.2%, “일부 실시하고 있다”가 40.7%로 나타났으며 내수업체의 경우는 각각 32.6%와 59.6%로 조사됐다.

2-6. 경고·지시·설명 등의 표시 여부

전체응답자 중 45.7%만이 “제품에 경고·지시·설명 등의 표시를 하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54.3%가 “안전 대책을 위한 표시를 하고 있지 않다”고 응답했다(그림 11).

업종별로는 음식료 업종의 67.9%가 “안전 대책으로 제품에 경고·지시·설명 등의 표시를 하고 있다”고 응답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두 번째로 의료·정밀기기 업종이 55.6%, 화합물·고무·플라스틱 업종이 51.9%의 순으로 안전 대책을 위한 표시를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규모별로는 소기업의 43.5%가 “경고·지시·설명 등의 표시를 하고 있다”고 응답한 반면, 중기업은 이보다 조금 높은 49.5%가 “안전 대책으로써 제품에 경고·지시·설명 등의 표시를 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수출기업의 경우 46.6%가 “안전 대책으로써 제품에 경고·지시·설명 등의 표시를 하고 있다”고 응답해 내수기업의 44%보다 조금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2-7. 결함 유무의 판단 인지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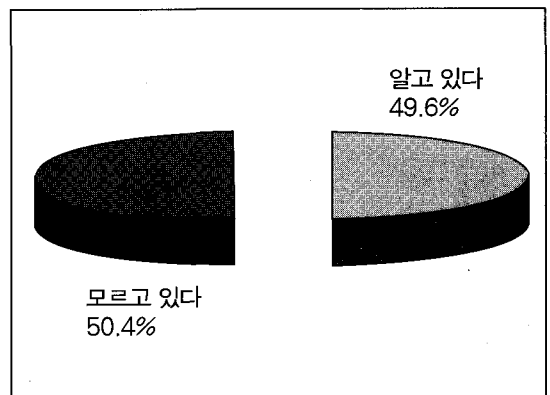
각종 표시 등이 PL법에 의한 제품 결함 유무의 판단 기준이 되는 것과 관련하여 과반수 정도인 49.6%의 중소기업자들이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50.4%는 인지하고 있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업종별로는 전기·전자·통신·음향·영상 업종이 70.4%로 가장 높은 인지도를 보였으며 그 다음으로 자동차부품·운송장비 업종이 63%, 섬유·의복·가죽·신발 업종이 51.7%의 순으로 높은 인지도를 보였다.

규모별로는 중기업의 67%가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소기업의 경우 불과 39.3%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두 그룹간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수출 유무별로는 수출기업의 53.7%가 각종 표시 등이 PL법에 의한 제품 결함 유무의 판단 기준이 되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 것에 반해 내수기업의 경우 41.8%로 나타나 두 그룹간의 인지도는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2) 결함 유무의 판단기준 인지여부



3. 제조물책임방어(PLD) 대책 실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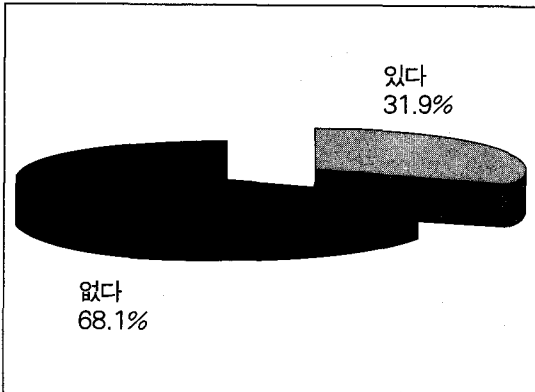
3-1. 상담, 고충접수, 사고처리 담당자 지정 여부

전체 응답자중 31.9%만이 “소비자에 대한 상담, 고충접수 및 PL 책임관련 사고 처리를 위한 담당자가 지정되어 있다”고 응답했으며, “지정되어 있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이 68.1%로 나타났다(그림 13). 업종별로는 음식료 업종의 64.3%가 “담당자가 지정되어 있다”고 응답해 PL 사고 처리에 대한 체계화가 가장 잘 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화장품·고무·플라스틱 업종(41.2%)과 의료·정밀기기 업종(38.9%) 순으로 PL 사고 처리에 대한 체계가 양호한 것으로 조사됐다.

규모별로는 중기업의 경우 “담당자가 지정되어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36.6%로 나타나 29.0%의 소기업에 비해 PL 사고처리 체계가 보다 잘 갖추어져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수출유무별로는 수출업체(33.7%)가 내수업체(28.3%)보다 PL 사고처리에 대한 대응 체계가 잘 갖추어져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그림 13) PL사고 처리 담당자 지정 여부



3-2. 리콜, PL소송시제품 추적체계 구축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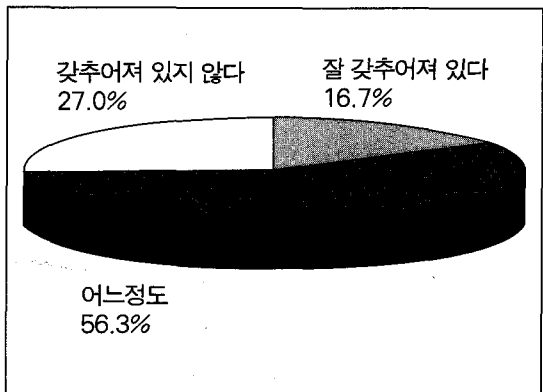
전체 응답자 중 “PL 소송시 해당되는 제품을 추적(회수)할 수 있는 체계가 잘 갖추어져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16.7%, “어느 정도 갖추어져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56.3%로 나타나 전체의 73.0%가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제품의 생산에서 판매까지 추적(회수) 체계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그림 14).

업종별로는 82.2%의 업체가 “PL 소송시 해당제품의 추적체계를 갖추고 있다”고 응답한 음식료 업종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화장품·고무·플라스틱 업종이 80.8%, 전기·전자·통신·음향·영상 업종과 의료·정밀기기 업종이 공히 77.8%로 비교적 해당 제품의 추적체계를 잘 갖추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규모별로는 중기업의 79.3%가 “PL 소송시 해당 제품의 추적(회수) 체계를 갖추고 있다”고 응답해 소기업의 69.3%보다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수출유무별로는 재수업체(75.0%)가 수출

(그림 14) 추적 체계 구축 여부



업체(71.9%)보다 해당 제품의 추적(회수) 체제를 보다 잘 갖추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3-3. 계약시 책임 분담 명시 여부

전체 응답자 중 “PL 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계약서 등에 거래처와의 제조물책임 분담을 명확히 하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8.7%에 불과하였으며, “리콜이나 클레임 등에 대한 책임 분담은 명확히 하고 있으나 인신사고 등에 손해배상책임은 명확히 정하지 않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27.7%로 나타났고 나머지 63.6%가 “거래관행상 계약서류상의 명확한 책임 분담을 하기가 어렵다”고 응답했다(그림 15).

업종별로는 음식료 업종이 19.2%, 의료·정밀기기 업종이 11.1%, 자동차부품·운송장비 업종이 10.3% 등의 순으로 거래처와의 제조물책임 분담 관계를 명확히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소기업의 경우 10.3%가 “PL 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계약서 등에 거래처와의 제조물책임 분담을 명확히 하고 있다”고 응답했으나, 중기업의 경우 그 수치가 6.1%로 더 낮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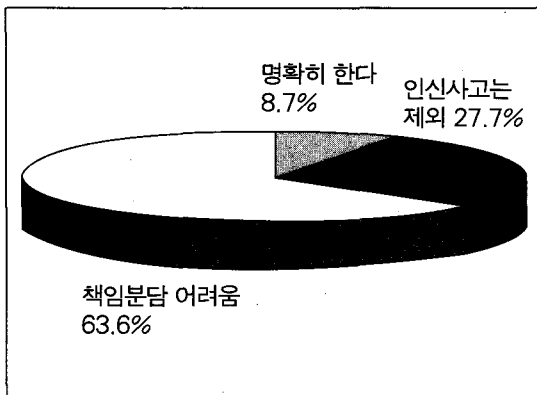
수출유무별로는 수출업체의 7.5%와 내수업체의 11.1%가 거래처와의 제조물책임 분담을 명확히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3-4. 제품결함에 따른 소비자 피해배상 경험 유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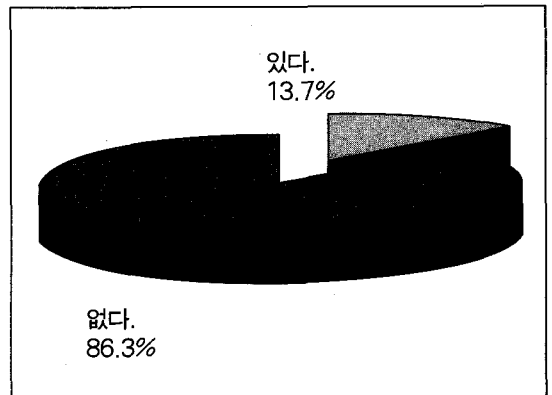
자사 제품의 결함으로 국내에서 소비자 배상을 한적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13.7%였으며, 배상을 한적이 없다고 응답한 경우는 86.3%로 나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은 제품 결함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배상을 한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16).

업종별로는 음식료 업종의 28.6%가 제품 결함에 따른 피해 배상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그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전기·전자·통신·음향·영상 업종과 화장품·고무·플라스틱이 각각 18.5%와 13.5% 순으로 피해 배상 경험이 많은 것으로

[그림 15] 계약시 책임 분담 명시 여부



[그림 16] 국내 배상 경험 유무



[표 2] 국내 소비자에 대한 피해배상 내역

품목별	결함내용	피해내용	피해배상액 (단위:천원)	배상방법
어묵	이물질 혼입	식용불가	제품가격의 10배	제품교환 및 현금지급
감자전분	이물질 혼입	식용불가	40,000	현금지급
식용유	악취발생	식용불가	25	제품교환
통팔앙금	이물질 혼입	치아손상	500	현금지급
청량음료	진공불량	식용불가		제품교환 및 배상
구두	밑창에 못 돌출	피부외상	400	현금지급
원단	축올과다	불량원단생산	25,000	외상매출금과 상계
동물용 주사제	유통기간 경과	기축근육손괴	1,000	현금지급
PVC 내압 호스	호스내 악취 발생	음식물에 악취 발생	1,000	현금지급
전자페달	작동 불능	사용불가		제품교환
베어링 하우징	치수 불량	사용불가	1,000	제품교환
전기 녹즙기	설계 불량	손가락 다침		치료비 지급
샌드위치패널	장착 불량		400	현금지급

나타났다.

규모별로는 소기업의 14.2%가 “제품결함에 따른 피해 배상 경험이 있다”고 응답해 12.7%의 중기업보다 피해배상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 중 “자사 제품이 외국 PL법에 의해 제소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0.4%(1건)에 불과했으며 거의 대부분 중소기업들은 외국 PL법에 제소된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4. PL 지원 행정 수요

4-1. PL 대응 연수 수요

철저한 PL대응을 위해 중소기업 경영자들은 자사 종업원 중 평균 5명 정도는 PL 전문 교육기관을 통한 연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음식료 업종의 경우 자사 종업원 중 평균 9명 정도는 PL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전자·전자·통신·음향·영상

업종이 평균 7명, 의료·정밀기기 업종과 화장품·고무·플라스틱 업종이 공히 평균 6명으로 조사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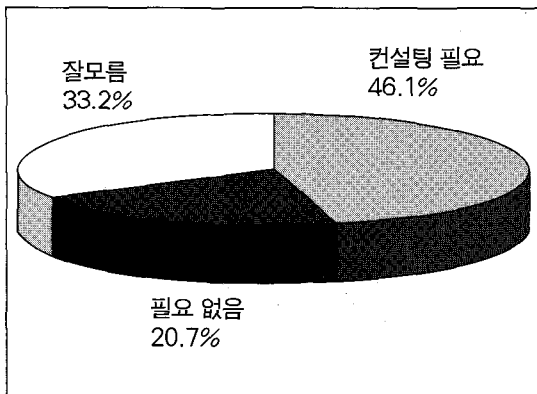
소기업의 경우 평균 3명의 자사 종업원이 PL 전문기관을 통한 연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중기업의 연수 필요인원은 평균 9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수출기업의 경우 자사 종업원 중 평균 6명 정도는 PL 대응을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내수기업의 경우 평균 4명 정도의 종업원이 PL 전문기관을 통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4-2. PL 대응 지도(컨설팅) 수요

“PL사고예방 및 방어 대책의 일환으로 컨설팅을 받을 필요성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46.1%, “컨설팅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응답한 경우가 20.7%로 나타났으며, 컨설팅의 필요성에 대해 “잘모르겠다”는 응답도 33.2%로 상당수의 중소기업자들은 PL컨설팅에 대해 깊게 생각해 보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림 17] 컨설팅 필요 여부



[그림 17].

업종별로는 의료·정밀기기 업종의 68.8%가 “PL 사고 예방 대책으로 컨설팅이 필요하다”고 응답해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으며 그 다음으로 음식료 업종(57.7%), 조립금속·기계장비·사무기기 업종(55.9%) 순으로 컨설팅의 필요성을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중기업의 47.7%와 소기업의 45.3%가 “PL 사고 예방 및 방어 대책의 일환으로 컨설팅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수출업체의 절반에 가까운 49.9%가 PL 사고예방 및 방어의 수단으로 컨설팅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내수업체의 경우 이보다 낮은 39.8%만이 컨설팅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PL법 내용에 관해 잘 알고 있는 업체’의 58.8%가 “PL 사고예방 및 방어대책 추진을 위해 컨설팅이 필요하”고 응답했으나, ‘PL법 내용에 관해 전혀 모른다는 업체’의 경우 30.8%만이 “컨설팅이 필요하다”고 응답해, ‘PL법 내용을 잘알고 있는 업체’일수록 컨설팅을 더욱 필요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표 3].

[표 3] PL법 내용 인지도별 컨설팅 필요 여부

구분	컨설팅 필요함	컨설팅 필요없음	잘모르겠음
잘 알고 있음	58.8	32.4	8.8
대충 알고 있음	41.8	19.0	34.2
잘 모름	39.2	19.6	41.2
전혀 모름	30.8	15.4	54.8

[표 4] PL 대책 추진 위한 자금소요 예상금액(업체당 평균)

구분	합계	시설자금	운전자금
소요비용	170	104	66

4-3. PL 대책 강구를 위한 자금수요

PL 대응을 위한 공정개선, 안전적합 설계, 제품검사 등에 필요한 시설자금은 평균 104백만원, 운전자금은 평균 66백만원 등으로 업체당 평균 170백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조사됐다 [표 4].


PL 대책 강구 비용으로 음식료 업종의 경우 평균 216백만원(시설자금 153백만원, 운전자금 63백만원)으로 가장 많은 금액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으며, 그 다음으로 화합물·고무·플라스틱 업종 194백만원(시설자금 131백만원, 63백만원), 자동차부품·운송장비 업종 193백만원(시설자금 118백만원, 운전자금 75백만원)순으로 많은 자금이 소요될 것으로 조사되었다.

규모별로는 소기업 PL 대책에 따른 자금소요 예상금액은 평균 144백만원(시설자금 87백만원, 운전자금 57만원)이었으며, 중기업은 이보다 많은 평균 226백만원(시설자금 145백만원, 운전자금 87백만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수출업체의 경우 PL 대책에 따른 소요비용으로 평균 159백만원(시설자금 102백만원, 운전자금 57백만원)으로 예상했으며, 내수업체의 경우 평균 189백만원(시설자금 109백만원, 운전자금 80백만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5. 맺음말

PL법 시행전인 현 시점에서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은 제조물책임 대책을 계획하고 있는 단계이며 제조물책임 방어대책 분야의 지원 강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종업원 규모, 수출업체 여부에 따라 대응력의 차이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소기업보다는 중기업, 내수업체보다는 수출업체의 대응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에 대한 PL 인지도 확신을 위한 지역순회 설명회 및 세미나 등의 지속적인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이를 위해 PL 상담창구의 지정 운영 및 PL 대응 지원을 위한 지도·연수의 강화, PL 대책 강구를 위한 소요자금의 확보가 요구되는 바이다. 

독자결심선

월간 포장계는 독자여러분들의 의견을 수용하기 위해 다양한 의견의 독자컬럼을 신설합니다.

어떠한 의견이라도 좋습니다.

포장인의 독설을 펼칠 지면을 열어하니 많은 참여 기다립니다.

필자는 밝히지 않겠습니다.

월간 포장계 편집실
TEL : (02)835-9041